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0,799,992	7,524,000
일반회계	229,189,161	6,875,675
특별회계	21,610,831	648,325
기타특별회계	21,610,831	648,32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4,229	15,12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45,974	52,37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05,547	24,166
주차장특별회계	11,533,535	346,006
기반시설 특별회계	24,085	723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6,997,461	209,92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60,62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